

강원도립대학교 초빙교원 보수 및 수당 지급규정

(제정) 2003-11-03 규정 제138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(개정) 2019-01-08 규정 제504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초빙교원 임용규정 제9조에서 규정한 초빙교원 보수 및 초과 강의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4.25.>

제2조(지급범위) 초빙교원의 보수는 책임시수(주당 9시간)이상의 강의 및 실험 실습수업을 수행하는 교원에게 지급한다. 단, 총장이 인정할 경우 9시간 미만의 강의 및 실험실습 수업 가능 <개정 2019.1.8.>

제3조(보수) 초빙교원의 보수는 매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급여액으로 지급하되 보수와 초과강의 수당은 임용계약서 작성 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.

제4조(초과강의수당) 주당 9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및 실험실습을 담당하는 경우 외래강사에 준하는 초과강의 수당을 지급한다. <개정 2019.1.8.>

제5조(지급방법) 월정 보수 및 초과강의(전월실적)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 <개정 2019.1.8.>

제6조(실비보상) 초빙교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통비,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(2003.11. 3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4.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9. 1. 8.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